

인천지방법원 2021. 4. 22 선고 2021가단2053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

담당변호사 박환택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4. 2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9. 12. 31. 체결된 상속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. 6. 4. 접수 제259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홍다선

별지